

KcLepTM 수험용(교육용) 2026년도 변경사항 안내

NewZen 뉴젠솔루션

작성일자 : 2026.09.08

01 부가가치



01.부가가치

2. 현금매출명세서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탭 추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외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탭 분리

현금매출명세서
1600 (주)뉴젠허션
법인 1771 2026-01-01-2026-12-31 부가세 2026 인사 2026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최근
정보

F4 불러오기 F6 수입구분입력 F7 역결제 F11저장 F12채널등록

조회기간 : 2026년 07월 ~ 2026년 09월 구분 : 2기 예정 수입구분 : 21.미디어콘텐츠창작업 ※ 현재 회사는 본 서식 필수 제출 업종입니다. <매출내역 없을 시 공란 신고>

No	합계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1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No	채널이름	채널주소(URL)	채널 개설일자	금융계좌		거래금액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세
1	뉴젠허션	https://www.newzensol	2026-01-01	기업은행	1111111111111111			
2								
합계								

Tip 계좌번호를(를) 입력하세요.

01.부가가치

5. 부가가치세신고서 : 가산세명세 개정서식 반영

29.가산세명세 (67) 미발급 등 세율 표기 변경 : 뒤쪽 참고 → 2/100 명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29.가산세명세				
사업자미등록등		64		
세 금 계산서	자연발급 등	65		1/100
	자연수취	66		5/1,000
	미발급 등	67		2/100
	가공 발급 · 수취등	68		4/100
전자세금 발급명세	자연전송	69		3/1,000
	미전송	70		5/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71		5/1,000
	자연제출	72		3/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73		
	무신고(부당)	74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75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6		
납부지연		77	7,200,00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78		5/1,000
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		79		1/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80		1/100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81		
납부특례	거래계좌 지연입금	8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미제출 · 과다기재		83		5/1,000
합계		84		

▲ 29.가산세명세 — (67) 미발급 등 2/100 명시

02

인사급여



NewZen 뉴젠솔루션 10

02.인사급여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안내사항 : 연령기준 개정 안내

▶ **결과 : 2026귀속 기준 만 10세부터 자녀세액공제 적용**

(9세에 해당하는 2017년생은 부칙 제3항에 따라 경과조치에서 제외되어 만 13세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이 **13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며(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한 번에 13세로 올리면 기존 공제대상(8~12세)이 갑자기 제외되므로, 부칙 제2조제2항으로 **2026~2029년 매년 1세씩 단계 적용(2026년 9세)**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생은 아동수당 개정으로 인해 수령 대상이므로,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경과조치(제2항)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17년생은 본문 기준(13세 이상)이 적용되어 **만 13세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메뉴 : 사원등록,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02.인사급여

3.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변경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상한액 6,370,000 → 6,590,000 / 하한액 400,000 → 410,000 (2026.7.1 시행)

반영메뉴 : 사원등록, 급여자료입력, 일용직사원등록, 일용직급여자료입력

12. 국민연금보수월액

400,000

국민연금납부액

19,470

입력 보수월액 400,000원(하한 미만) → 하한액 410,000 × 4.75% = 19,475원 → 19,470원(절사) ✓ 변경된 계산값과 일치

12. 국민연금보수월액

6,600,000

국민연금납부액

313,020

입력 보수월액 6,600,000원(상한 초과) → 상한액 6,590,000 × 4.75% = 313,025원 → 313,020원(절사) ✓ 변경된 계산값과 일치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근로자 부담 4.75%) 적용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4.75% (10원 미만 절사)

※ 입력 보수월액이 하한 미만·상한 초과여도 상·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02.인사급여

5.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상향

특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 40%로 상향 (본세 40% + 지방소득세 4% = 실질 44%)

구분	공제대상	공제율	세액공제액
10만원 이하	100,000	100/110	90,909
10만원 초과~20만원	100,000	40%	40,000
20만원 초과 (일반)	3,300,000	15%	495,000
20만원 초과 (특별재난)	5,000,000	30%	1,500,000
소 계	8,500,000	-	2,125,909
세액공제 한도 적용			1,811,299
최종 세액공제액			1,811,299

기부금 공제금액 계산 참조									
근로소득금액		30,450,000		정치, 고향기부금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가능액		1,811,299	
코드	구분	지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1 (15%, 30%)	공제율2 (25%, 30%, 35%)	공제율3 (40%)	소득/세액공제액	공제 초과이익액	
20	정치자금(10만원이하)								
20	정치자금(10만원초과)								
43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이하)	100,000	100,000				90,909		
43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초과20만원이하)	100,000	100,000				40,000		
43	고향사랑기부금 일반(20만원초과)	3,300,000	3,300,000				495,000		
44	고향사랑기부금 특별(20만원초과)	5,000,000	5,000,000				1,185,390		
10	특례기부금 2016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17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18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19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0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1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2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3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4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5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6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7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8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9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30년이월								
4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6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7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8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9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0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1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2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3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4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5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6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7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8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29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30년이월								
합계		8,500,000	8,500,000				1,811,299		
정치기부금 10만원초과 세액공제							495,000		1,185,390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일반기부금(종교) 세액공제									
합계									

- ▶ 소계 2,125,909원이 산출세액 한도(세액공제가능액 1,811,299원)를 초과하여 특별재난분이 1,500,000 → 1,185,390원으로 조정됩니다.
- ▶ 조정 후 합계 1,811,299원 = 캡처 합계와 일치

▲ 프로그램 계산 화면

02.인사급여

6.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변경

기존에는 총급여로만 공제한도 결정(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 변경: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총급여	자녀 0명(기본)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

총급여

42,000,000

최저사용액(총급여 25%)

10,500,000

구분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출금액	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	일반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	최종공제금액	
③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100,000,000 15%	15,000,000	1,575,000	13,425,000	3,500,000	3,500,000	3,500,000	
④직불/선불카드		30%							
⑤현금영수증		30%							
⑥문화체육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적용)		30%							
⑦전통시장 사용분		40%							
⑧대중교통 이용분		40%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③~⑧)	100,000,000		15,000,000	아래참조 *1	공제출금액 - 공제제외금액	아래참조 *2	비례 공제가능 금액, 공제한도	아래참조 *3	일반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1 공제제외금액 산출 방법

구분

계산식

공제제외금액

최저사용금액 ≤ 15%공제출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X 15%

1,575,000

15%공제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30%공제출사용금액

③X15% + [최저사용금액 - ③]X30%

15%*30%공제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30%*40%공제출사용금액

③X15% + (④+⑤+⑥)X30% + [(최저사용금액 - ③+④+⑤+⑥)]X40%

*2 공제한도 산출 방법

총급여액

공제한도

	기본공제(자녀 0명)	자녀 1명	자녀 2명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3 추가공제금액 산출 방법(①+②+③+④)

구분

금액

계산식

①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음수이면 0), 300만원]

②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금액

③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추가공제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200만원

※ 참고사항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중 사용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2. 도서, 공연비 등 추가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등 대상금액은 [신용카드]탭에서 입력합니다.

확인(ESC)

▲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공제한도 산출 화면

NewZen 뉴젠솔루션 15

NewZen 뉴젠솔루션 16

02.인사급여

8. 기타소득자(이자배당)등록 외 : 소득구분 추가(81.위약금)

소득구분 신설에 따른 81.위약금 추가

반영메뉴 : 기타소득자(이자배당)등록, 기타소득자료입력, 기타소득지급명세서(영수증),
기타이자배당소득제출집계표

소득구분 코드도움

전체 ▾ 81

코드	구분
여기를 클릭하여 검색	
81	위약금 등

확인(Enter)

취소(Esc)

02.인사급여

9.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외: 9.조세특례 등 코드 추가

QC: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⑤~⑩, 법인세법§73②·③)

QD: 고배당기업이 거주자에게 현금배당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조특법§104의27)

조세특례 등 코드도움

전체 ▾ |

코드	구분
여기를 클릭하여 검색	
PV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 93의2)
PW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X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소법 부칙 § 2, 법률 제6051호)
PY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한 경우
PZ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QA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26의2)
QB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27)
QC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 § 129⑤~⑩, 법인세법 § 73②·③)
QD	고배당기업이 거주자에게 현금배당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조특법 § 104의27)
SA	개인연금저축(조특 § 86)
SB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 § 86의3)
S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 § 87)

확인(Enter)

취소(Esc)

03

법인조정



03.법인조정

1. 농특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감면내용 문구 수정

102.(2) 감면내용 수정 및 인쇄 수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농특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정기

1600 (주)뉴젬솔루션

법인 17기

2026-01-01~2026-12-31

무기세 2026

인쇄 2026

☒ 닫기

🔍 도록

🔑 코드

📄 삭제

🖨 인쇄

🔍 조회

☰ CF5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일반 법인세 감면 세액

(1)구분	(2)감면내용	(3)「조세특례제한법」 근거조항	코드	(4)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5)비 과 세	10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양도차익비과세	제10조· 제40조	604		별지 제6호서식 ㉔란 해당금액
	102 벤처투자회사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 4	62Q		
	103		606		
(6)소득공제	104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별지 제7호서식 ㉔란 해당금액
	105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4항	463		
	107		458		
(7)비과세,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 세율-산출세액
	108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109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110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111 무역조정지원기업의사업전환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11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주식양도차익감면	제10조· 제40조	13B		
	11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114 행정중심복합도시등공장이전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115 사회적기업에대한감면	제85조의6	11L		
	116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감면	제86조의6	11M		
	11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118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1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120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121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122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123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02		
	124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03		
채아바라라트그 차여 , 나어자사서기여에 대한 가며					

개정

전자

Tip

NewZen 뉴젠솔루션 21

03.법인조정

3.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감면한도 계산내용 추가

공장이전(116) · 본사이전(117)에 감면한도 계산내용 다이얼로그 추가 및 계산내용 설명 추가(인쇄서식 포함)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 7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정기] 1600 (주)뉴젬솔루션 1771 2026-01-01~2026-12-31 2026 1월 2026

CF5 전체식별 F6 구분조회 F7 과세연도 F8 신청일 F11 저장 F12 불러오기

구분	근거법령	코드	⑥감면율	⑦대상세액	⑧감면세액	⑨한도총족 감면세액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0				
(10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10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10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10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감면한도 계산내용)
(106)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107)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10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10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110)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11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11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						
(113)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						
(11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						
(1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북						
(116)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						감면한도 계산내용)
(117)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						감면한도 계산내용)
(11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감면한도 계산내용)
(119)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						
(12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12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12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12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2019년개정전)	11L				(감면한도 계산내용)
(124)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2019년개정전)	11M				(감면한도 계산내용)
(125)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2019년개정전)	11A				
(165) 세액감면 합계		1A4				

한도총족 감면세액

7.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감면한도 계산

(32)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33) 투자기준 감면한도 ((32) × 70%)

(34)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35)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33) + (34))

확인(Tab) 취소(Esc)

전자 전자 (우편발급)

Tip 한도총족 감면세액을 입력하세요. (입력 도우미로 입력)

▲ 공장 수도권 밖 이전 — 감면한도 계산내용 화면

03.법인조정

4.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 구분 명칭 수정

비과세·이월과세추가납부액 탭 (101)·(105) ①구분 명칭 및 인쇄서식 수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최저한세배제세액감면		최저한세배제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비과세, 이월과세 추가납부액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과세·면제·소득공제	(101)벤처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102)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10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604		
	(104)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105)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106)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③ 구 분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⑤ 이월과세납부세액	
(176)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177)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178)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 제7항		66A		
(179)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 제3항		66B		
(180)합 계							667		
⑥ 구 분					⑦ 근거법 조항		코드	⑧ 대 상 금 액	⑨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181)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182)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3)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3			
	(184)기 타					775			
	(185)소 계					780			
「법인세법」	(186)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187)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 등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188)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189)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190)기 타					785			
	(191)소 계					784			
(195)추가납부세액 합계((185) + (191))						790			

03.법인조정

5.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인쇄서식·공제율 및 화면 수정

인쇄서식 상단 개정일자 및 ④공제세액 공제율 수정

해당연도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 탭 화면 수정 — 재료비 등 발생명세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 추가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1600 (주)뉴젠솔루션

법인 17기

2026-01-01~2026-12-31

부가세 2026

인사 2026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F3 합병법인

F5 전체삭제

F6 신고일 및 인적사항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11 저장

F12 추가공제율

발생명세 및 증가발생액계산

공제세액

연구소/전담부서 현황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연구과제출발표

크게보기

1 인건비 발생 명세

No	①연구과제명	성명	②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생년월일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연구전담 등 구분
1	1. 연구소 2. 전담부서 3. 직접인력				
	합계				

크게보기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No	③연구과제명	계	④재료비 등 견본품 등 (별표5 1.가.3)	임차료 등 (별표5 1.가.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비용 (별표5 1.가.5)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 (별표5 1.가.6)
1						
	합계					

크게보기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No	⑤연구과제명	위탁(재위탁)연구 또는 공동 연구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⑥연구개발비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⑦금액	⑧수탁기연 전담부서 등 수행여부
1								
	합계							

크게보기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No	⑨비용구분	상호 또는 성명	⑩기타 연구개발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⑪금액
1				
	합계			

크게보기

5 인력개발비 발생

No	⑫비용구분	⑬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⑭지급처 또는 구입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⑮금액
1						
	합계					

개정

전자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

Tip

현재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회사등록 메뉴의 15.중소기업여부:1.여)

03.법인조정

6.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지방소득세납세지 반영

불러오기 시 거래처등록의 지방소득세납세지 입력값이 반영되도록 수정

Tip 지방소득세납세지를 입력하세요.

▲ 거래처등록 — 지방소득세납세지 입력

Tip 1. 원천(국)을 입력하세요.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불러오기 반영

03.법인조정

7.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서식 개정 반영

서식 개정으로 메뉴·인쇄서식 수정 — 2.기업업무추진비 조정(갑) 탭 화면 및 인쇄서식 수정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와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분리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정기

1600 (주)뉴젠솔루션

법인 17기

2026-01-01~2026-12-31

무기세 2026

인세 2026

달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최근 정보

CF2 사용자계정관리

F3 조정등록

CF5 전체조회

F6 계정과목 설정

F7 원장조회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기업업무추진비 입력 (출)

2.기업업무추진비 조정 (갑)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

중소기업

☐ 정부출자법인
☐ 부동산임대업등(법.령제42조제2항)

구분

금액

1.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2.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상입액

3.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금액(1-2)

4. 12,000,000 (중소기업 36,000,000) X 월수(12) / 12

36,000,000

일반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X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X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X 3/10,000

기준

5. 소계

기업업무추진비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 X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X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X 3/10,000

기준

6. 소계

한도

7. 수입금액기준

(5-6) X 10/100

8.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4+6+7)

36,000,000

문화기업업무추진비

9.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10.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9와 (8 X 20/100)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1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12.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13.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11+12와 (8 X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14.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8+10+13)

36,000,000

15. 한도초과액(3-14)

16. 손금상입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3과 14중 적은 금액)

개정

전자

Tip

NewZen 뉴젠솔루션 26

03.법인조정

8.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문구 수정

2.세액공제(2) 탭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기준 문구 수정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1600 (주)뉴젠솔루션
법인 17기
2026-01-01~2026-12-31
무기세 2026
인세 2026

F3 조정등록
F4 계산내역
CF5 전체삭제
F6 회계배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세액공제(1)
2.세액공제(2)
3.달가공제 및 이월액계산

구분	계산기준	계산명세		공제대상세액
		투자액	공제율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선결제금액 × 1%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기본공제 - 투자금액 × 1(중견5/7.5, 중소10)/100	F4-계산내역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 원천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6/9, 중소12)/100 -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20, 중소25)/100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 20(중견20/25, 중소30)/100	F4-계산내역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 (기본공제 200% 한도)	F4-계산내역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F4-계산내역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기본공제 - 투자금액 × 1(중견7/7.5, 중소12)/100	F4-계산내역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 원천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8, 중소14)/100 -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20, 중소25)/100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 20(중견20/25, 중소30)/100	F4-계산내역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 (기본공제 200% 한도)	F4-계산내역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F4-계산내역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출자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 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 × 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금액 × 3/100			
합계				

개정
전자
Tip

감사합니다

NewZen 뉴젠솔루션

copyright © all right reserved by newzensolution